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06~

제출연월일	2006. 8.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정이유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농촌총각의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거창군내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당해연도 1월1일 기준 거창군내 3년이상 거주자

○ 농촌총각이란 남자 농업인으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35세이상인 자

○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의미

다. 지원대상은 희망자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하고, 지원시기는 대상자가 결혼하고 외국인 여성이 입국후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함 (안 제3조, 제5조).

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원신청서 읍면장 제출→요건 검토후 군수에게 추천→자체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선정

마.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 신부 입국후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청구

○ 외국인 신부 국내입국 및 거주 등록 사실 확인후 지원금 교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농업・농촌기본법」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도 표준안 : 도 농업정책과-1774(2006. 2. 13)

나. 예산조치 : 12,000천원(도비 30%)

다. 기타

(1)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입법예고(2006. 3.21~ 4.10)결과 : 의견제출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군내 거주자" 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거창군내에 주소를 두고 당해연도 1월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농촌총각" 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국제결혼" 이라 함은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농촌총각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 제4조에서 정한 지원금액은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신청서(별지 제1, 2호 서식)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촌총각에 해당하는지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의 지원신청서를 검토하고 자체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①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여 등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입국과 거주등록 사실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영농경력	년 월 일 ~ 현재(년, 월)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결혼 후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 .

신청자 : (인)

거창군수 귀하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결과

이 장 사실확인	적, 부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등확인)	적, 부	담 당 공무원	직) 성명) (인)
읍·면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						

※ 부모와 동거할 경우 영농규모, 주택보유 현황은 부모의 현황을 기재
주민등록 등본, 농지원부 사본 읍면에서 첨부

붙임 : 인우보증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인 우 보 증 서

1. 피보증인(외국여성과 결혼할 농업인)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폰)

2. . 보증인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피보증인과의 관계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연락처 : 자택) 휴대폰)

상기 피보증인을 “200 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대상자로 추천함에 있어서 보증인은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부합됨을 확인하며, 피보증인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이후에 동 부부가 성실한 농업인으로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후견인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정히 확약합니다.

200 . . .

인우보증인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청구서

1. 사업명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2. 지원대상자(혼인을 이행한 농촌남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폰)
3. 배우자(외국인 여성) 인적사항
   가. 국적(주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연령) :
4. 결혼일자 :
5. 결혼장소 :
6. 결혼 총비용 :
7. 청구금액 :

위와 같이 “200 년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0 . . .

신청인 (인)

첨부 : 호적등본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거창군수 귀하